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6. 29.

발 의 자 : 이원욱 · 김영진 · 강훈식
권칠승 · 홍의락 · 백혜련
김병기 · 안호영 · 조경태
전현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여도 이를 위한 거래 방법이 없음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9제5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13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

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9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급인증기관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과 관련한 비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부담한다.

1. 재생에너지 공급자
2. 재생에너지 종류·공급량 및 공급기간
3. 유효기간

부 칙

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의9(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2조의9(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공급인증기관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과 관련한 비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부담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재생에너지 공급자</u> 2. <u>재생에너지 종류·공급량 및 공급기간</u> 3. <u>유효기간</u>